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25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민병덕 · 이병진 · 최혁진
조계원 · 김영배 · 황정아
염태영 · 박민규 · 김남근
박홍배 · 이언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 · 환경보전 · 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 · 조정 · 참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음.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 ·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후 2년 후에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2024.10월)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등을 이행한 곳은 약 50%에 불과해 정부의 이행 수준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 권고 사항이자 지속가능발전 실효적 이

행의 핵심인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숙의 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법 제29조)은 임의적 조항이라 전혀 진행되지 못함.

한편, 국제민간정책연구소인 지속가능발전해법연구소(SDS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수는 77.3점으로 167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하는 등 2019년 18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 중임.

이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이자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이행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의 추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기능에 더하여 심의·조정·의결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나.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므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5년)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2년) 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참여숙의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안 제29조).

라.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효율적인 자금 배분,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심의하기”를 “심의·조정·의결하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60명”을 “80명”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조정·의결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조정·의결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을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책 수립, 이행 및 평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의 설치) ----- ----- ----- ----- <u>심의 · 조정 · 의결</u> <u>하기</u> ----- -----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u>6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 ⑧ (생 략)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80명</u>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1. ~ 14. (생 략)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 ----- <u>심의 · 조정 · 의결한다</u> . 1. ~ 14.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심의 · 조정 · 의결한다</u> .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숙의공
론화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
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